

붙임3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및 동점자 처리 방침

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	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
제17조(채용비위 피해자 구제) ②공기업·준정부기관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,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	제20조의3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 ②원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,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□ 서류전형 예비합격제도

- 운영목적: 서류전형 증빙서류 점검 결과 부적격자 발생 등 전 단계 합격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, 차순위자에게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
- 선정방법: 서류전형 최소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 중, 전형별 합격자 차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기회 제공
- * 결과 발표 시 별도 예비합격 번호 부여 없음

□ 면접전형 예비합격제도

- 운영목적: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부적격사유 발생에 따른 채용 취소, 입사 후 의원면직 등 해당 채용공고상 채용계획 인원의 결원 발생 시,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 기회 제공
- *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예비합격자 지위 유지
- 선정방법: 면접전형 합계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 중,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부터 고득점순 선발(가점 포함, 최종 합격인원의 200%, 최소 0명 ~ 최대 10명)
- * 사전에 공표한 예비합격자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

□ 전형별 동점자 처리 방침

- 근거: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

구분	처리방침
서류	·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(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)
면접	·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 선정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.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 지원 대상자 4. 서류, 필기, 면접 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5. 면접전형, 필기전형, 서류전형 순으로 각 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